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9. .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 이유

문화이용권 발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전체 발급자의 85% 이상이 매년 반복 신청하고 있어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발급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조항이 상위 법령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급 신청 시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간소화(안 제2조)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 생략 및 재발급 관련 조문(제4조) 이동

나. 문화이용권의 발급 방식 개선(안 제3조)

- 1) 문화이용권 형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카드 관련 세부 사항 삭제(제1항)
- 2) 발급자가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신청주의(제5조)에서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다음연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제2항)
- 3) 합산 신청, 비밀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제6조)은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3항)

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개정 및 삭제

- 1) 재충전 방식 변경 안내, 비밀번호 기재란 삭제 등 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2) 위임장 관련 서식 통합(제3호, 제4호)
- 3) 제도,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서식 삭제(제5호, 제6호,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의견 조화 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발급”을 “발급”으로,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발급”을 “발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별도의 문화이용권 발급 없이 재충전해줄 수 있다.
- ③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발급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이용권

[]발급
[]재발급

신청서

※ 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제3쪽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 또는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목은 변경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또는 보호자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안내문자 수신 동의	[] 안내메일 수신 동의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안내문자 수신 동의	[] 안내메일 수신 동의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안내문자 수신 동의	[] 안내메일 수신 동의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안내문자 수신 동의	[] 안내메일 수신 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다음연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원금이 자동 지급(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문화이용권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니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에 국제·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발급(재충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년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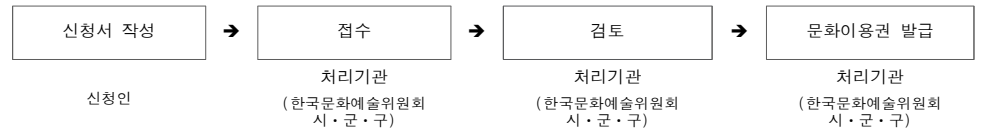
작성 참고사항

-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②, ③ 수신 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유의사항

1. 신청 후 다음연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원금이 자동 지급(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문화이용권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화이용권 이용 정보(발급·이용 기간, 가맹점, 이용 잔액 조회 등)는 누리집(www.mnuri.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 세대 내 다수의 발급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카드에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정부지원금 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본인 현금을 충전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매년 문화이용권 이용 기간(~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반환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충전금은 주관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6.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7.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인 자가 직접 문화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문화이용권 []발급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 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 제3쪽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 또는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 재발급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목은 변경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기타()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명					
	단체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시설 대표자 본인 []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발급 대상자 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2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 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1	(서명 또는 인)
	대상자 2	(서명 또는 인)
	대상자 3	(서명 또는 인)
	대상자 4	(서명 또는 인)
	대상자 5	(서명 또는 인)
	대상자 6	(서명 또는 인)
	대상자 7	(서명 또는 인)
	대상자 8	(서명 또는 인)
	대상자 9	(서명 또는 인)
	대상자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발급(재충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수급 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년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1	(서명 또는 인)
	대상자 2	(서명 또는 인)
	대상자 3	(서명 또는 인)
	대상자 4	(서명 또는 인)
	대상자 5	(서명 또는 인)
	대상자 6	(서명 또는 인)
	대상자 7	(서명 또는 인)
	대상자 8	(서명 또는 인)
	대상자 9	(서명 또는 인)
	대상자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 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유의사항

- 문화이용권 이용 정보(발급·이용 기간, 가맹점, 이용 잔액 조회 등)는 누리집(www.mnuri.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이용권은 정부지원금 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본인 현금을 충전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문화이용권 이용 기간(~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반환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충전금은 주관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인 자가 직접 문화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군·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군·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군·구)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명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발급,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위임자 6	(서명 또는 인)
	위임자 7	(서명 또는 인)
	위임자 8	(서명 또는 인)
	위임자 9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0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후단 신설>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 ----- ----- ----- ----- 발급 ----- ----- ----- 첨부하여 ----- ----- ----- ----- ----- ----- ----->. <단 서 삭제> ----- ----- ----- ----- ----- ----- ----- ----- ----- ----- -----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삭 제> -----
1. 영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2. ~ 4. (생략)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후단 신설>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 5. (생략)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
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발급

제출

. <단서 삭제>

. 문화이

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

다.

<삭 제>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와 같음)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① -----

해당하면 -----

-----.

1. 이용자의 성명	<삭 제>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삭 제>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신 설>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 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 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 라도 별도의 문화이용권 발급 없이 재충전해줄 수 있다.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③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발급 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 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 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 라도 별도의 문화이용권 발급 없이 재충전해줄 수 있다.

③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발급 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정한다.

<삭 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 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 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 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 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 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 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 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 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 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 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 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삭 제>

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世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

<삭 제>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u>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u>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④ <u>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을 해지”는 각각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으로, “별지 제6호서식”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해지 신청서”는 각각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로 본다.</u>	
---	--